



約 定 書

92

87-1

約 定 書

國防部長官 金聖恩(以下 "甲"이라 한다)과 在團法人 韓國輸出産業公團 理事長 李丙虎(以下 "乙"이라 한다)는 國務會議의 諒解下에 輸出産業工業團地를 造成 할 目的으로 다음條項을 相互約定한다.

約定事項

第1條 乙은 京畿道 始興郡 西面 博達里 所在 國有地上에 甲의 設計에 따라 1964年度에 $40^F \times 78^F$ 彈藥庫型 永久建物 5棟을, 1965年內에 $40^F \times 78^F$ 彈藥庫型 永久建物을 17棟 $40^F \times 144^F$ 同型建物을 1棟 $20^F \times 185^F$ 同型建物을 2棟 總計 25棟을 新築하고 同期間內에 甲이 要請하는 工作物을 新設함을 原則으로 하고 第4條 第12項에 依한 鑑定價格에 따라 調整한다. 다만 各工事의 監督은 甲의 責任으로 한다.

第2條 甲은 乙이 要求하는 日時에 國有財産인 別紙目録 土地상의 美8軍所屬 彈藥庫中 28棟 ~ 32棟을 于先 撤去시켜서 乙이 第1次 整地作業을 할수 있도록 하고 1965年內에 同地上의 殘餘 彈藥庫 全部를 撤去한다.

第3條 乙이 新築 또는 新設하는 25棟의 彈藥庫建物과 工作物이 竣工되는 時에

當該建物 및 工作物과 그價格이 相當한 別紙目錄土地와를 國有財産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交換하고 雙方은 一에 따른 所有權 移轉節
次를 遲滯없이 履行한다.

第4條 前項에 依하여 財産을 交換하는 境遇에 雙方 各所管 또는 所有財産의
價格은 다음要領에 依하여 評定한다.

① 甲의 所管 國有財産의 價格은 第1次 整地作業을 着手하기 直前에 二個
銀行으로 부터 當時價를 鑑定 받아서 其中 最高價格을 採擇한다.

② 乙의 所有建物 및 工作物의 價格은 甲이 設計한 設計圖과 示方書에 依하여
竣工한 當該建物과 工作物의 約定價格과 二個銀行 鑑定價格中에서 그 最下
價格을 採擇한다.

第5條 財産交換時에 別紙目錄 國有土地와 乙의 所有建物 및 工作物의 價格이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그 差額 相當部分을 國有財産法이 規定하는 範圍內에서
相互 協議하여 이를 調整한다.

第6條 乙은 現 韓國軍 彈藥庫 第1, 第2, 第3 地域 (特次 美軍에게 引繼한 地
域임) 內에 있는 124 棟의 鐵板製 彈藥庫 兩側의 마구니 工事費도 負擔하

여야 하며 材料는 現存 Asp 46 第1地域 彈藥庫 마구리를 그대로 使用
할수 있다. 다만 乙이 負擔하는 工事費는 交換價格에 包含되지 않는다.
第7條 本約定書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關係法令에 抵觸되지 아니 하는
範圍內에서 雙方이 協議하여 處理한다.

第8條 本約定書의 解釋에 있어서 雙方의 見解가 一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甲의
解釋에 依한다.

第9條 本約定書는 國務會議이 議決하는 날로부터 工效力을 가진다.

雙方은 本約定事項을 必히 遵守할 及之 決定하고 그를 證하기 위하여 本約定書
貳部를 作成 署名하여 各各 工一部를 保管한다.

西紀一九六四年 十月十六日

甲 國防部長官

金 聖 恩

乙 韓國輸出産業公團理事長

李 丙 虎

立會者 商工部長官

朴 忠 勳